

# 2015 유암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유암초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받은 통학버스 운행 업체(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행하는 2015학년도 유암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버스 운행”이라 함은 “공급자”가 통학버스(전세버스)를 이용하여 “수요자”가 지정하는 구간 및 일정에 의거 해당 학생들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행기간) 운행기간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2016년 02월 29일**까지이며, **방학기간에도 운행한다.**

제4조 (운송 대상) “공급자”는 유암초등학교 학생 및 유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치원생을 운송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요자”로부터 용역기간 범위 내에서 교육 목적상 또는 학교운영상 필요하여 별도의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운행 구간 · 횟수 · 시간 등)

- ① 운행 일수는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학생의 수업일 및 방학 중 모든 교육활동 일수이며, 매일 운행횟수는 **등교(2회), 하교(2회)로 하되, 교육운영 여건에 의해 추가운행 할 수 있다.**
- ② 학생 수송 구간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통학버스 노선표(별첨 2)대로 실시하며, “수요자”로부터 **운행코스 변경 등 별도의 운행요청이 있을 때에도 “공급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운행 시간은 등·하교 시 초등학교 수업시간을 고려하고 통학버스 노선(별첨 2)과 같이 운행하되 “수요자”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 ④ “수요자”는 학생 전출입, 학사일정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운행 구간, 운행일수, 횟수, 시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변경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 ⑤ 등하교 이외의 운행

## 1. 관내

“수요자”는 각종 학교행사(각종 대회 출전 등) 및 현장학습(학년군별 주제체험

학습 12회, 계절체험학습 2회 등) 등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휴무일 포함) “공급자”에게 추가 운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공급자”는 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2. 관외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수요자”로부터 관외 교육활동에 필요한 추가 운영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전세버스 임차료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6조(운영 차량 · 운전기사 · 제비용 부담 등)

- ① “공급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회사 직영 차량으로 **24인승 전세버스 1대**를 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학버스는 **2010년(포함)식 이후에 생산된 차량**으로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한다.(차량 대체 시에도 제1항, 제2항 동일하게 적용)
- ③ “공급자”는 **도로교통법 제52조 각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서 정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및 요건, 기타 안전장치(광각실외후사경, 어린이보호차량 표시등, 승하차보호기, 안전발판, 후방알림장치, 후방경보장치,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등) 등에 관한 사항을 2015년 02월 17일까지 반드시 이행완료하여야 한다.**
- ④ “공급자”는 통학버스에 **“유암초등학교”라는 표지판을 버스 앞·좌·우에 부착**하고 황색으로 도색하여 어린이보호차량임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 ⑤ “공급자”는 운영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유지·관리(인건비, 보험료, 검사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식대, 정비, 부품교체, 과태료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 ⑥ “공급자”는 통학버스 운전자를 회사소속 정규직원으로 고정 배정하여 운행하게 하며 운전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 하여야한다.
- ⑦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며, 만 65세 이하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합격한 자로 한다.
- ⑧ 통학버스와 운전자를 지정하여 동일 차량과 동일 운전자로 운행하여야 한다. 단, 통학버스 및 운전자 등의 교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사전에 “수요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 (운전자의 의무)

- ① 운전자는 회사소속과 성명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 ② 운전자는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 ③ 운전자는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 ④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정상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버스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 ⑥ 운행 중 습득 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학교 측에 인계한다.
- ⑦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취업 제한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⑧ 운전자는 매 운행일 마다 차량운행일지(별첨 1)를 작성하고 차량의 안전상태와 함께 매월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 ⑨ 운전자는 학생이 탑승하여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고 하차시 안전 도우미가 안전지도를 마치고 탑승한 후 출발한다.
- ⑩ **운전자는 통학차량 관련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⑪ (운전자 금지사항) 운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9.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10.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통학버스 운행의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요구하는 행위
  11. 학생·교직원·학부모 등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비난 및 원성을 받는 민원 행위와 성폭력·성희롱 등을 유발하는 행위
- ⑫ (사고 보고)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사상자 구호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학교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5. 사상자의 인적 사항
6.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8조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 ① “수요자”는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의 사정,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소홀로 인한 지연운행 및 정류장 무정차 확인 시 운행요금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한다. 또한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자의 교체요구 등 학교장의 시정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구분	처리내용	비고
월 1회	각서 제출, 용역비 50,000원 공제	
월 2회	각서 제출, 용역비 100,000원 공제	
월 3회	각서 제출, 용역비 150,000원 공제, 해당운전자 교체	

제9조 (차량 및 운전자 대체) “공급자”는 배정된 차량의 계속검사·고장수리 또는 운전자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최소 5일전)에 “수요자”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일 운행 전까지 제12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차량의 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통학 학생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동급 대체차량은 운행전 차량보험 가입증명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 등의 가입)

- ① “공급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 자료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요자”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류 제출)**

- ① “공급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및 **보험증서** 사본(원본 제시)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같다.
- ② “공급자”는 운행차량 운전자의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신원진술서(2부), 기본증명서 각1부를 아래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같다.

운전자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연 식	차 종	비 고 (연락처)

**제12조 (관리 · 지도)** “수요자”는 운전자 및 통학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용역사용료 청구 · 지급)**

- ① 용역료는 계약금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공급자”는 익월 5일까지 차량운행일지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요자”에게 용역료를 청구하며, “공급자”는 용역료를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제14조 (손해배상)**

- ① “공급자”는 본 계약에 의거 학생수송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제7조 ‘운전자의 금지사항’에 의한 사고로 “수요자”가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수요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③ “공급자”는 계약 해지 및 계약 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본 계약에 의해 (운행한 대차 버스 등)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 ④ “공급자”는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교의 물품 및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15조 (계약해지 등)

-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②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공급자”의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시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
  2.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공급자”의 사정,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연 운행, 지정된 정차 장소에 정차하지 아니한 때, 운전자의 불친절 및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요자”의 서면경고 3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급자”는 의무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시정사항을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③ “수요자”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자동차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무단으로 통학버스를 3회 이상 운행하지 않은 경우
  3. 도급자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 제16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운수규칙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 ②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7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등)**

- ①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전세금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 “공급자”는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수요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 ③ 본 계약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학교 모든 계약에 이익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향후 우리학교의 모든 입찰(수의계약 포함)에서 배제한다.

**제18조 (기밀누설 금지)** “공급자” 및 “공급자”의 직원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학교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학교의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수요자”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0조 (기타)** “수요자”는 본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통학버스 운영을 위하여 “수요자”가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별첨 1. 2015 유암초 차량운행일지 1부

별첨 2. 2015 유암초 통학버스 노선표 1부. 끝.

## 2015학년도 유암초등학교 차량운행일지

2015년 월 일 ~ 2015년 월 일

(단위 : 시, 분, km)

	날짜 (월 일)		출발시간	도착시간	주행거리	운전자	날인	비고
	등교							
하교								
정비 및 차량안전상태								
정비내용:								
차량안전상태:								
기타사항:								





2) 하교(2회, 총 운행거리 27km) - ※ 시간·거리·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음

하 교	선당동 방향	장소	① 유암초	⇒	②어룡동 (국도변상가)	⇒	③자작동 (자작리교회건너편, 마을회관)	⇒	④건화주유소 뒤쪽	⇒	
		시간	16:30		16:40		16:45		16:50		
		탑승인원	-	3명	10명	9명					
		거리		2km	2km	2.5km	1km				
		장소	⑤ 선단세차장	⇒	⑥GS편의점설운점 (맥도널드맞은편)	⇒	⑦ 세창아파트	⇒	⑧군단앞 버스정류장	⇒	
		시간	17:00		17:05		17:15		17:20		
		탑승인원	1명	1명	1명	2명					
		거리		1km	1.5km	3km	1km				
	장소	⑨ 유암초	① 총 14km ② 총 27명 ③ 총 55분								
	시간	17:25									
	탑승인원	-									
	거리										
	신읍동 방향 (포천 시내)	장소	① 유암초	⇒	② 포천고	⇒	③ 주공A	⇒	④ 차고지	① 총 13km ② 총 9명 ③ 총 20분	
		시간	17:30		17:40		17:50				
		탑승인원	-	2명	7명						
		거리		4km	3km	6km 유암초 도착 기준					